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체력시험 일정 등 공고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체력시험 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필기시험 합격자

○ 합격인원 : 211명 ※ 합격자 명단(붙임 1)

구 분	계	소방		구급		구조	화학	건축	운전	정보통신	관련학과
		남	여	남	여						
합격인원	211	117	9	39	12	10	2	5	5	3	9

○ 성적열람 : 2020. 7. 6.(월) ~ 2020. 12. 31.(목)

※ 성적열람은 필기시험 불합격자에 한함

○ 열람장소 :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2

체력시험 일정 등

□ 일시 및 장소

○ 시험일시 : 2020. 7. 15.(수) ~ 7. 17.(금) 09:00부터 ※ 등록시간(08:00~08:40)

○ 장 소 : 조천체육관(제주시 조천읍 조천 18길 11-1)

○ 준 비 물 : 응시표, 신분증, 증명사진(3cm×4cm) 1매

○ 일자별 응시대상 ※ 개인별 응시일정(붙임 2)

일자별	7.15.(수)	7.16.(목)	7.17.(금)
인원	71명	70명	70명
대상	소방(남)	소방(남), 소방(여), 화학 건축, 운전, 정보통신	구급(남), 구급(여) 구조, 관련학과

□ 체력시험 실시 방법

- 종목 및 평가점수(붙임 3)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의2 관련 「별표7」
- 측정방법(붙임 4)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4」
- 합격결정 :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2호

□ 도핑테스트 안내

- 측정대상 :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5~10% 이내에서 무작위 추첨
 - ※ 불합격자, 중도 포기자 중 도핑테스트 대상자로 선정된 응시자도 도핑테스트를 반드시 받아야 함
- 세부내용 : 붙임 5~7 참고
- 결과조치 :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양성)판정 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각종 시험에 있어서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하여 응시표, 증명사진, 신분증*을 지참하고 08:40까지 등록 후 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함
 -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한함
- 등록 시 당일 시험장 입구에 비치된 도핑테스트 동의서(붙임 8)와 체력 시험 채점표(사진포함)를 작성하여 제출
- 지정시간 내 등록하지 않은 응시생은 응시 포기자로 간주되어 불합격 처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이 불가함
 - ※ 점심식사는 12:00 ~ 13:00에 실시하며 도시락 등 개별 지참

- 시험장에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등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체력측정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연습과 준비운동을 하고, 체력시험으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 실시기관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

□ 체력검정기구 사전 개방

- 개방기간 : 2020. 7. 8.(수) ~ 7. 11.(토) 10:00 ~ 17:00
- 개방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교육대(제주시 산천단 동길 24)
- 개방기구 : 4종목(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윗몸일으키기)

3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 지침 안내

- 시험 당일, 코로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출입문 1개소로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며, 감염관리를 위하여 감염관리 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 주어야 합니다.

※ 시험 응시자가 아닌 외부인의 출입은 엄격히 통제함

- 응시자는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스크 미착용시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하게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항상 착용

- 응시자는 입구에서 손소독제로 손위생을 한 후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유무 확인을 거쳐야 입장할 수 있으며,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확인된 유증상자는 별도 조 편성하여 마지막에 시험 실시하고 시험 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입구에서 예방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입실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평소보다 여유를 두고 시험장에 도착하여야 함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확인된 유증상자 중 증상이 심하거나 현장에서 문진 등을 통해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소 등 방역당국의 의견에 따라 시험실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중 「확진환자」, 「의사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 등은 **시험장 출입을 금합니다.**

* 환자의 접촉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가격리 중인 응시자가 시험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사전 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할 보건소 등과 협의 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자가격리자 시험응시 신청 】

- ▶ 신청기간 : '20. 7. 9.(목) 09:00 ~ 7. 16.(목) 18:00
- ▶ 신청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 ▶ 신청방법 : **전화신청(064-710-3514, 3515)**
- ▶ 신청서류 : 자가격리자 체력시험 응시 신청서(붙임9 서식) 및 격리통지서 사본
(전화신청 후 팩스(064-710-3519) 또는 이메일 opus411@korea.kr로 제출

○ 자가격리자가 사전에 시험응시 신청을 하지 않거나, 보건소의 임시 외출 허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 안전에 이상없음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응시가 불가**합니다.

○ 해당 시험장의 응시자 중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나오면 14일간 증상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며, 시험에 응시한 경우 시험일부터 14일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증상 발현시 반드시 질병관리본부(1339 또는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 개인이 사용한 휴지나 물품은 가방에 넣어 다시 가져가야 함

- 시험응시가 불가능한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에 의해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자가격리자가 아님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신청을 하여 별도로 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도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에 의해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붙임
1.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
 2. 체력시험 일자별 명단
 3.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4. 체력시험 측정방법
 5. 도핑테스트 안내
 6.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7. 치료목적 사용 면책신청서
 8. 동의서
 9. 자가격리자 체력시험 응시 신청서. 끝.

붙임 1**2020년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경쟁채용(소방일반 - 남) : 117명**

응 시 번 호				
20110007	20110009	20110014	20110015	20110018
20110020	20110032	20110034	20110039	20110048
20110049	20110053	20110062	20110070	20110073
20110074	20110089	20110094	20110101	20110107
20110125	20110130	20110140	20110143	20110144
20110147	20110150	20110152	20110153	20110155
20110156	20110158	20110163	20110168	20110176
20110178	20110182	20110201	20110203	20110206
20110207	20110209	20110213	20110226	20110234
20110239	20110240	20110242	20110245	20110246
20110247	20110258	20110261	20110276	20110283
20110295	20110296	20110301	20110302	20110303
20110305	20110312	20110314	20110322	20110324
20110326	20110327	20110341	20110342	20110349
20110355	20110357	20110371	20110376	20110379
20110380	20110388	20110395	20110399	20110404
20110409	20110412	20110430	20110460	20110472
20110473	20110476	20110484	20110490	20110491
20110498	20110505	20110506	20110522	20110534
20110537	20110545	20110546	20110565	20110573
20110580	20110585	20110586	20110588	20110591
20110596	20110602	20110603	20110604	20110605
20110608	20110613	20110615	20110626	20110628
20110630	20110639			

□ 공개경쟁채용(소방일반 - 여) : 9명

응 시 번 호				
21510004	21510017	21510024	21510026	21510030
21510036	21510037	21510042	21510045	

□ 경력경쟁채용(구급 - 남) : 39명

응 시 번 호				
20310001	20310004	20310011	20310013	20310014
20310018	20310019	20310021	20310023	20310026
20310030	20310031	20310032	20310033	20310035
20310036	20310037	20310038	20310041	20310043
20310046	20310050	20310051	20310055	20310061
20310064	20310068	20310070	20310071	20310075
20310076	20310078	20310079	20310084	20310085
20310086	20310089	20310091	20310103	

□ 경력경쟁채용(구급 - 여) : 12명

응 시 번 호				
20410003	20410008	20410009	20410014	20410015
20410017	20410021	20410028	20410029	20410031
20410042	20410063			

□ 경력경쟁채용(구조) : 10명

응 시 번 호				
23010001	23010002	23010003	23010005	23010006
23010008	23010011	23010012	23010015	23010017

□ 경력경쟁채용(화학) : 2명

응 시 번 호				
20710003	20710007			

□ 경력경쟁채용(건축) : 5명

응 시 번 호				
21110004	21110009	21110010	21110011	21110012

☐ 경력경쟁채용(운전) : 5명

응 시 번 호				
21710005	21710006	21710015	21710021	21710026

☐ 경력경쟁채용(정보통신) : 3명

응 시 번 호				
23110005	23110014	23110016		

☐ 경력경쟁채용(관련학과) : 9명

응 시 번 호				
20510001	20510007	20510010	20510011	20510013
20510016	20510021	20510023	20510024	

□ 1일차 - 2020. 7. 15.(수) : 71명

응 시 번 호(소방 남)				
20110007	20110009	20110014	20110015	20110018
20110020	20110032	20110034	20110039	20110048
20110049	20110053	20110062	20110070	20110073
20110074	20110089	20110094	20110101	20110107
20110125	20110130	20110140	20110143	20110144
20110147	20110150	20110152	20110153	20110155
20110156	20110158	20110163	20110168	20110176
20110178	20110182	20110201	20110203	20110206
20110207	20110209	20110213	20110226	20110234
20110239	20110240	20110242	20110245	20110246
20110247	20110258	20110261	20110276	20110283
20110295	20110296	20110301	20110302	20110303
20110305	20110312	20110314	20110322	20110324
20110326	20110327	20110341	20110342	20110349
20110355				

□ 2일차 - 2020. 7. 16.(목) : 70명

응 시 번 호(소방 남·여, 화학, 건축, 운전, 정보통신)				
20110357	20110371	20110376	20110379	20110380
20110388	20110395	20110399	20110404	20110409
20110412	20110430	20110460	20110472	20110473
20110476	20110484	20110490	20110491	20110498
20110505	20110506	20110522	20110534	20110537
20110545	20110546	20110565	20110573	20110580
20110585	20110586	20110588	20110591	20110596
20110602	20110603	20110604	20110605	20110608
20110613	20110615	20110626	20110628	20110630
20110639	21510004	21510017	21510024	21510026
21510030	21510036	21510037	21510042	21510045
20710003	20710007	21110004	21110009	21110010
21110011	21110012	21710005	21710006	21710015
21710021	21710026	23110005	23110014	23110016

□ 3일차 - 2020. 7. 17.(금) : 70명

응 시 번 호(구급 남·여, 구조, 관련학과)				
20310001	20310004	20310011	20310013	20310014
20310018	20310019	20310021	20310023	20310026
20310030	20310031	20310032	20310033	20310035
20310036	20310037	20310038	20310041	20310043
20310046	20310050	20310051	20310055	20310061
20310064	20310068	20310070	20310071	20310075
20310076	20310078	20310079	20310084	20310085
20310086	20310089	20310091	20310103	20410003
20410008	20410009	20410014	20410015	20410017
20410021	20410028	20410029	20410031	20410042
20410063	23010001	23010002	23010003	23010005
23010006	23010008	23010011	23010012	23010015
23010017	20510001	20510007	20510010	20510011
20510013	20510016	20510021	20510023	20510024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제23조의2 관련)

종 목	성별	평 가 점 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kg)	남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여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kg)	남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여	85~ 91	92~ 95	96~ 98	9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 이상
앞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남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여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 뛰기 (cm)	남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여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 이상
윗몸 일으 키기 (회/분)	남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여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 오래 달리기 (회)	남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75	76	77	78 이상
	여	28	29~ 30	31	32~ 33	34~ 36	37~ 39	40	41	42	43 이상

비고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붙임 4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종 목	측 정 방 법 등
악 력 (kg)	○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배 근 력 (kg)	○ 측정 장비 : 배근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쇠줄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 측정 장비 :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전자식 측정기 가능), 매트 1개 ○ 측정 단위 : cm ○ 측정 방법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뻗친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유의사항 :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뻗었을 경우 또는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제자리 멀리뛰기 (cm)	○ 측정 장비 : 구름판 및 모래터(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 또는 전자식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판 ○ 측정 기록 : cm ○ 측정 방법 :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 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윗몸 일으키기 (회/분)	○ 측정 장비 :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측정 기록 : 회 ○ 측정 방법 : 양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 를 측정한다.
왕복오래 달리기 (회)	○ 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절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 녹음 CD : 별도 ○ 측정 기록 : 단위(회) ○ 측정 방법 - 20m코스의 양쪽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 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비 고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넘어진 경우 포함)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를 위해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등은 금지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 및 방법은 금지 됩니다.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검사는 스크리닝 검사에서 양성반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무작위로 선정 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 시료(A,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보관 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는 본시험의 시행기관으로 통보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로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 분석결과를 통보 받은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치료목적 사용면책 등의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의 분석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B시료 분석을 요청 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가 비정상 분석석임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음성으로 최종판단 되나, B 시료의 분석결과 역시 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도의 지정 일 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①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의 의료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한다.
 - ②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 ③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양성)이 나온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소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에 대해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검색 사이트(금지약물은 성분명으로 발표)

- www.kada-ad.or.kr (금지약물 검색 → 검색자 해당종목 및 직업"기타")
- www.druginfo.co.kr
- www.kimsonline.co.kr

□ 금지약물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1. 동화작용제 : 총 7종 및 그 대사물질*

*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 ▶drostanolone ▶methenolone
- ▶methasterone(17β-hydroxy-2α,17α-dimethyl-5α-androstan-3-one)
- ▶stanozolol
- ▶1-testosterone(17β-hydroxy-5α-androst-1-en-3-one)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 ▶testosterone

나. 기타 동화작용제 : Clenbuterol

2. 이뇨제 : 총 3종

- ▶hydrochlorothiazide ▶chlorothiazide ▶furosemide

3. 흥분제 : 총 3종

- ▶methylhexaneamine(dimethylpentylamine)
- ▶methylephedrine ▶ephedrine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4. 마약류 : 총 11종

- ▶Buprenorphine ▶dextromoramide ▶diamorphine(heroine)
- ▶fentanyl 및 유도체 ▶hydromorphone ▶methadone
- ▶morphine ▶oxycodone ▶oxymorphone
- ▶pentazocine ▶pethidine

□ 금지방법

○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1. 응시자 인적사항

1. 성명: _____	2. 성별: 여 ☐ 남 ☐
3. 생년월일: _____	4. 응시번호: _____
5. 핸드폰: _____	6. 이메일: _____

2. 의료정보

1) 충분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진단소견

2) 사용 허가된 의약품으로도 치료 가능한 경우, 금지약품을 처방한 임상의학적 정당성을 설명하십시오

※ 진단증빙자료(진단서, 처방전, 소견서등)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에는 포괄적 병력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검사보고서, 검사실 조사 및 영상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보고서 또는 편지의 원본에 대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는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객관적이어야 하며, 만약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도 포함시킬 수 있다.

3. 세부 진료내용

금지약물	1회 사용량	사용방법	사용빈도
1.			
2.			
3.			

치료기간

duration of treatment:

1회 ☐ 응급 ☐

기간(주/월) _____

4. 담당의사 서약

나는 위에서 언급한 치료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하였으며, 금지목록 이외의 대체약물 사용은 위 응시자의 의료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성명: _____ 전공분야: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팩스: _____ 전자 우

편: _____

서명: _____ 날짜: _____

5. 응시자 서약

본인, _____는(은) 응시자 인적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금지약물과 방법의 사용 승인을 요청한다. 나는 나의 의학정보가 시험실시기관, 시료분석기관 및 기타 시험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허락한다. 나의 의학정보가 위의 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담당의사와 시험실시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서명: _____ 날짜: _____

부모/보호자 서명: _____ 날짜: _____

(응시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서명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응시자와 함께 또는 응시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다.)

※ 구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완료 후 재 제출해야한다.

서류 접수 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시오.

동 의 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응시번호 : ○ 연 락 처 :

2020년 월 일

위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따른 금지약물의 복용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확인절차에 응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0. 7. .

위본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소방공무원 채용 자가격리자 체력시험 응시 신청서

☐ 성 명 : _____

☐ 생년월일 : _____

☐ 응시번호 : _____

☐ 지원사항(직렬) : _____

☐ 주 소

○ 주민등록주소 : _____

○ 자가격리주소 : _____

※ 신고일 기준 실제 자가격리하고 있는 주소

☐ 연 락 처

○ 본 인 : _____

○ 가족 등 : _____

○ 기 타 : _____

※ 원활한 연락체계 구축을 위해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재(2개 이상)

위와 같이 자가격리자 대상 별도 체력시험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자 2020. 7. .

신 청 인 _____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